

양도성예금증서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범위

이 약관은 거래처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과의 양도성예금증서 거래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과 거치식 예금약관의 내용을 적용한다.

제2조 가입조건

- ①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대상은 당행에 실명확인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보유한 기업고객 중 거주자로 한다.
- ② 양도성예금증서의 최저가입금액은 원화의 경우 원화 일백만원, 외화의 경우 미국 달러화 일천불에 상당하는 해당 통화금액으로 한다.
- ③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기간은 30일 이상 60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 또는 일단위로 은행과 거래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발행방식

양도성예금증서는 실물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없이 은행법에 따른 등록부에 등록기재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발급하며, 양도성예금증서의 등록발행에 동의한 경우 은행에 실물증서의 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만기일 전 지급거절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만기후 이자

거래처가 만기일 후에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원화의 경우 정기예금 약관 제6조 제2항, 외화의 경우 외화정기예금 약관 제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6조 등록발행

- ① 양도성 예금증서는 「은행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발행하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 ②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 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한다.
- ④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 및 준용되는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법」 및 관련 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양도 및 담보제공

- ① 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양도성예금증서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은 제2조 제1항의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 양도사실을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